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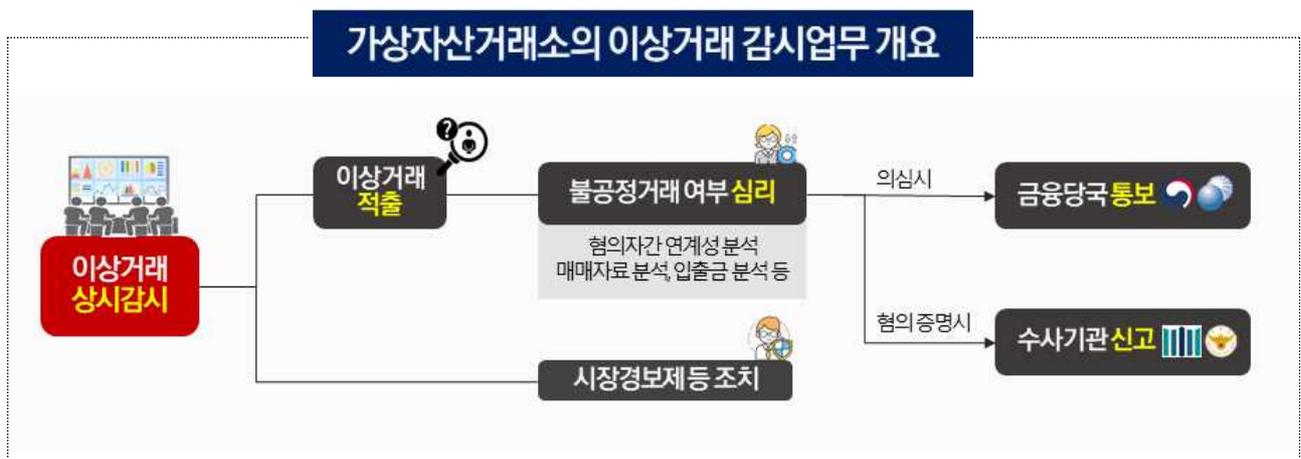
보도	2024.7.5.(금) 조간	배포	2024.7.4.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	(02-3145-7100)
		담당자	팀 장	이재훈	(02-3145-7107)
	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	책임자	본부장	윤민섭	(02-6959-8084)
		담당자	차 장	홍 균	(02-6959-8087)
		홍보담당자	과 장	유민상	(010-2305-8084)

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 시행(24.7.19.)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.

-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-

I.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시작됩니다!

- '24.7.19.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,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.
-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「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II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!

◆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.



1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

- **(과거)** 각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,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.
- **(개선)**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적출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였고,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< 추가된 주요 매매정보 축적 항목 >

① **호가정보**: 매매주문제출 시점의 10호가까지 호가·주문잔량 정보로서, 혐의계정의 매매주문이 얼마나 시세를 변동시켰는지 확인 가능

직전가	2,446원
주문 형태	2,454매 1,930개 매수
현재가	2,452원

② **매매 주문매체 정보**: 매매주문 IP, 주문매체유형 등 정보로서, 혐의계정과 연계성이 있는 계정을 찾는 데 유용하게 사용됨



2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

- **(적출기준)** 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,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하였고,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 적출 모형 예시>

- 우선, ①**가격·거래량**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**종목기간**을 탐지하고, ②**동 종목기간**에서 **주문·체결관여율** 등이 **높은 계정**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



- **(시스템 구축)** 위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 및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*한 상태이고,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 조정 중에 있습니다.

*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99.9% 해당

3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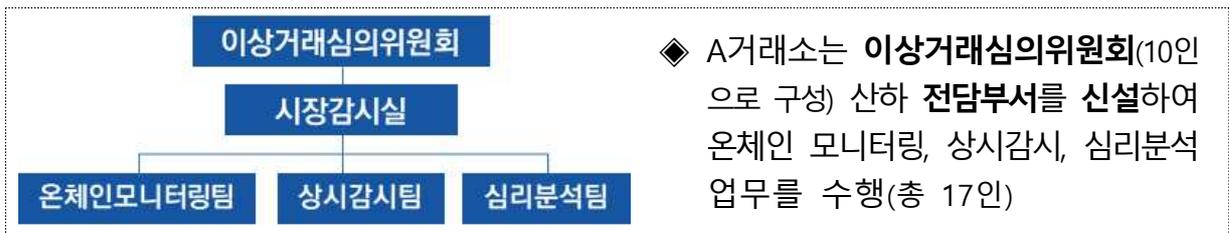
- **(심리기준)**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,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.

<시세조종 혐의 주요 심리방법 예시>



- **(상시감시조직 구성·운영)**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이상거래 적출·분석·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,
 -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중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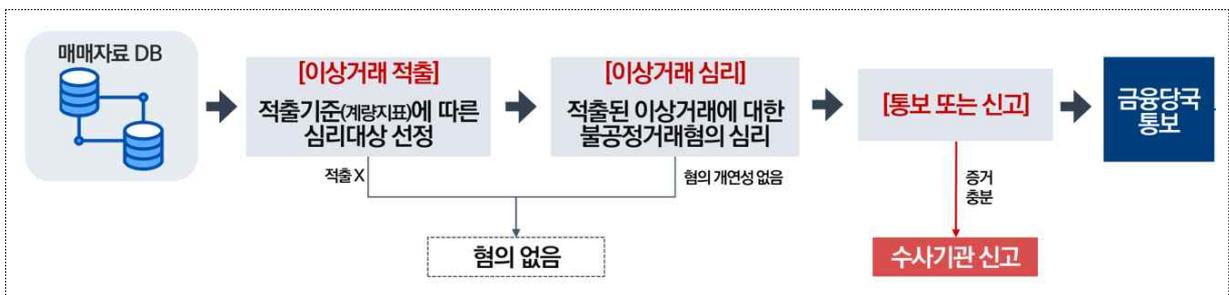
< A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 및 인력(예시) >



4 혐의사항의 통보·신고체계 구축

- **(통보·신고기준)** 금융당국에 통보(또는 수사기관 신고)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*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* 부당이득,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 및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전반적 고려사항 제시

< 이상거래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>



- **(보고체계 구축)**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,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,
 -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 하였습니다.

Ⅲ.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것입니다!

◆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입니다.

1 적발대상 행위

- **(미공개정보이용)**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,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* 등이 해당됩니다.
*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매매에 이용한 행위도 포함
- **(시세조종)**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·통정매매(예:자전거래), 지속·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·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.
- **(부정거래)**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,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.

2 적발절차 및 조치

- 가상자산거래소는 “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”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, 매매자료, 계정개설정보,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며,
 -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·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·신고 조치할 것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